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지방순회 설명회 설명자료**

2003. 5 ~ 6

목 차

1.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논의동향 및 우리의 대응 ... 1
2. 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책 32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논의동향 및 우리의 대응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1.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출범

1.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타결방식
3. 각료선언문 개요
4. 최근 협상 동향
5. 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I.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1. 출범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간 세계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전례 없는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
- 급속한 세계무역의 확대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주도한 무역자유화에 의해 가능하였으며, GATT는 주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라고 불림)을 진행하여,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감축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하였음
- 다자간 무역협상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1986년에서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음.
- 1990년대 후반부터 WTO 회원국들은 UR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라운드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02년부터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라고 부름.
- WTO 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음.

- 그러나 다수국가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므로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여, 3년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음.

2. 협상의제 및 타결방식

- DDA 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음.

※ DDA 협상의제

-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 규범 관련 의제
 -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 ※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 DDA 협상은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협상타결에 필수적인 주고받기(give and take)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DDA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하도록 되어있음. 협상이 실질적으로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3년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7년 이상 소요되었던 UR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임.

3. 각료선언문(협상 mandate) 개요

- 농 업
 -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및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가지 協商 목표(3 pillars) 설정
 - 비교역적관심사항(NTC)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 당초 협상시한은 2003. 3. 31까지 세부협상원칙(modalities) 결정, 2003. 9 제5차 WTO 각료회의시까지 1차 양허안 제출

- 비농산물 시장접근
 - 첨두관세(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 포괄적 협상을 개시

- 서비스
 - 모든 분야에 대한 예외없는 협상과 request, offer를 주된 협상 방식으로 결정
 - 준비 과정에서 합의, 채택한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이 향후 협상의 기초임을 재확인
 - 2002.6.30까지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 2003.3.31까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각각 제출

- 무역규범
 -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및 지역협정과 관련된 GATT 및 GATS 조항들의 명료화 및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개선 및 명확화를 위한 협상에 있어 수산 보조금에 대한 WTO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로 함.
 - 현행 협정의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후, 본격적인 협상단계로 진입
- 환경
 - WTO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 의무와의 관계와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이슈
 - 2003.9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합의(consensus)에 의해 결정한 후, 협상을 개시
 - 그 동안에는 협정에 포함될 요소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토록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핵심 요소들을 선언문에 열거

4. 최근 협상 동향

가. 전반적 동향

- 2002년 초부터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UR협상에 비해 전반적인 협상진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업협상의 관세감축폭 및 보조금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세부원칙(modalities)의 기한내(3.31)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DDA 협상의 시한내 타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

- 작년말 시한까지 타결에 실패한 의약품, 개도국 우대 및 이행문제는 각각 일반이사회 의장 및 WTO 사무총장 주도로 협의 진행
-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등 농업 이외 협상분야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나. 분야별 동향

(1) 농 업

- 2003.3.31을 시한으로 한 세부협상원칙(modalities)합의에 실패, 의장 제시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
- 5월부터 특별품목(SP : Special Product)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6월중 농업위 특별회의를 개최, 세부협상 원칙에 대해 협의 예정
- 농업은 DDA 협상분야중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협상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므로, 특히 미국과 EC가 긴밀히 협의하여 농업분야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2) 비농산물 시장접근

- 협상일정을 마련
 - 2002.12월말까지 협상방식에 대한 제안서 제출
 - 2003.5월말까지 세부협상원칙(modalities)을 마련
- 2003.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NTBs)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비교적 짧은 시한내 구체화된 세부협상원칙(안)들이 제시됨.

- 관세분야 : 25개 제안서가 되었으며, 우리 등 6개국은 구체화된 관세감축 Formula를 제시
 - 미국, EC, 일본, 중국, 인도, 한국
 - 비관세분야 : 18개국이 자국이 직면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제출하였고, 이중 6개국은 접근방식을 제시(미국, EC, 뉴질랜드, 일본, 칠레, 캐나다)
- 5월말 세부협상원칙(modalities) 결정시한을 앞두고 5.16 의장 제안서가 제시됨.
- 관세는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여 비교적 높은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현재의 관세수준이 감안되도록 함.
 - 분야별 관세철폐 대상으로 전자.전기, 수산물, 신발, 가죽제품, 자동차 부품, 보석 및 귀금속, 섬유.의류 등 7개 분야를 제시
 -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확인작업후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선.개도국간 협상목표에 대한 현저한 입장차로 시한내 합의가능성은 불투명

(3) 서비스

- 2002. 6월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 교환을 통해 본격적인 양자협상 체제로 돌입
 - 우리는 36개국에게 양허요청서를 전달하였으며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함.
 - 그동안 32개국과 45회에 걸쳐 양자협의를 개최

-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3.3.31.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
 - 현재 우리나라 등 23개국이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임.
- 5월부터 1차 양허안을 기초로 양자협상 진행중

(4) 무역규범

- 반덤핑, 보조금일반, 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야로 구분하여 협상을 진행
- 2003.5월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그룹 회의를 개최, 현행 협정의 명료화 및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발굴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反덤핑 : 우리나라, 일본, 칠레, 브라질, 노르웨이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反덤핑협상 Friends그룹이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33개 개선항목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주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항목은 사실상 다 제시된 상태
 - 보조금 : 최근들어 EC, 미국을 중심으로 위장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면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
 - 수산보조금 :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율을 반대하는 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왜곡 및 자원고갈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를 별도로 규율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5. 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 전 망

- 5.9 개최된 제9차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시 각국은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신축성 및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향후 협상진전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업협상 modalities 수립을 위한 기술적 협의 지속
 - 서비스 협상은 각국 양허안이 계속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부터 양자협상 본격화
 - 비농산물 modalities 수립(5월말까지)
 - 투자·경쟁정책 등 4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 modalities 수립(칸쿤 WTO 각료회의까지)

- DDA 협상의 핵심분야인 농업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데에는 미국·EU간 합의가 중요하고, 특히 EU의 신축성 발휘가 관건임.
 - 최근 미국과 EU간의 긴밀한 협의, WTO 일반이사회의장 및 Supachai 사무총장이 개발관련 이슈의 해결을 위해 적극 관여하기 시작함으로써 협상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임.

- 칸쿤 각료회의시에는 농업등 다수의제가 미해결상태로 상정될 경우, 각료회의가 매우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므로 농업, 비농산물 등 주요이슈에 대한 주요협상원칙에 대해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됨.

□ 대응방향

-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2003.1/4분기까지 59회 이상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회의 개최
- 주요 협상분야에서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
 - 농업, 서비스, 반덤핑, 투자 등 friends 그룹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
 - 특히, 농업 등 우리의 취약분야와 관련,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 개방이 불가피한 분야를 포함, 협상 진행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단체와 긴밀히 협의
 - 민·관 합동포럼 및 각종 간담회 등 활용
 - DDA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 (www.wtodda.net)
- DDA 협상을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임.
 - 세계 시장확대 및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상 추진
 - 농업, 수산업 등 취약 분야에서는 농어촌·농어업 특별대책위를 중심으로 중장기 구조조정계획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검토중

- 첨 부 : 1. DDA 분야별 주요 쟁점
2. 서비스 협상 동향
3.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동향
4. 규범 협상 동향

DDA 분야별 주요쟁점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감축을 추진 - 미국은 모든 농산물 관세를 25%이하로 감축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일본,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주장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EU 등 선진국은 금융·통신·환경·전문직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의 개방을 추진 - 우리나라는 통신·건설·해운 등 분야 개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요구
비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개도국의 관세인하를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섬유 등 개도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에서의 선진국 무역장벽 감축을 요구
반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개정에 소극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일본 등 다수국은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적극 추진
수산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은 특별규제 도입을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일본은 수산물만 별도 취급하는데 반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국이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보적 입장
싱가폴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WTO 규범의 조기수립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소극적 입장
개도국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은 미온적 입장 - 우리나라는 중도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개도국 관심사항의 우선 해결 주장

<첨부 2>

DDA 서비스 협상 동향

I. DDA 서비스협상 동향

1. 협상 경과

가.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에서 도하개발 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출범하면서 협상 의제 7개 중 하나로 포함

- 2002.6.30까지 1차 양허요청서 제출
- 2003.3.31까지 1차 양허안 제출

나.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및 국내규제 등 서비스 규범제정 문제는 산하기구에서 별도로 논의 진행중

2. 양허요청서 교환 및 양자협상 개최현황

가. 양허요청서 교환 현황

구 분	상호 제출	일방 제출/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웨이, 폴란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오만,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13) - 우리만 위 13개국에 제출
우리가 접수 (25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웨이(*), 폴란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	파나마, 모리셔스 (2) - 위 2개국만 우리에게 제출

* 1차 제출후 추가 제출

나. 양자협상

-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간 30여개국과 5차례 총 49회 개최

3. 1차 양허안 제출 동향

- 5.16 현재 총 23개국이 제출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EC*, 호주*, 뉴질랜드*, 대만*, 노르웨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바레인*, 알제틴*, 스위스*, 홍콩*, 이스라엘, 세네갈, 폴란드*, 세인트키츠네비스, 체크*
- * 표는 우리가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국가 : 15개국

4. 평 가

- 가. 서비스협상은 여타 분야에 비해 논의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나. 다만, 협상진전에 있어서 농업 등 여타 분야와의 불균형, 다자 규범제정을 위한 논의의 부진, 문화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각국간 현격한 입장 차이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 다. 다수 개도국들은 DDA 협상이 일괄수락 방식으로 타결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논의가 균형되게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농업 협상 등 다른 분야에서의 논의진전 여부가 서비스분야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II. 우리나라의 1차 양허안 (Initial Offer) 작성

1. 1차 양허안의 성격 및 작성 방향

가. 1차 양허안의 성격

- WTO 회원국들에게 우리가 1차적으로 제시하는 시장개방 계획서로서 협상이 2004년말 최종 타결될 때까지 이미 제출한 양허안 내용을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추가하여 제출 가능

나. 작성 방향

- 실제개방 수준을 반영
 -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장을 개방한 수준을 감안하여 양허안을 작성
- 민감한 분야 제외
 - 영화상영(스크린쿼타와 관련된 분야),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등은 공공성 및 국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1차 양허안에서는 일단 제외

2. 작성 경과

-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대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금년 1~3월간 4차례 「서비스협상 대책반 회의」 개최 및 부처간 개별 협의를 통해 1차 양허안 실무초안을 작성
- 관계부처 실무협의
 - 1차 협의(1.28~29) : 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와 외교부간 개별 협의
 - 2차 협의(2.12) :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복수 부처 협의
 - 3차 협의(2.21) : 외교부가 통합 작성한 양허안 실무초안을 토대로 「서비스협상 대책반 회의」
 - 4차 협의(3.12) : 1차 양허안 실무초안 내용 최종검토
- 1차 양허안 확정 : 대외경제장관회의(3.21)

3. 우리나라의 1차 양허안 주요 내용

가. UR 미양허 분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양허하는 분야

-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 전문디자인, 수의, 에너지 유통, 인력알선(placement of personnel),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등

나. 기존의 양허를 개선하는 분야

통신 서비스

- 97년 WTO 통신협상 이후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조치 내용을 이번 1차 양허안에 반영

건설 서비스

- 토공사업 및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원 포함)을 새로이 허용

유통 서비스(중개)

-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를 허용하되,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대한 국경간 공급 및 인터넷 판매 등은 불허

금융 서비스

- 상업적 주재의 경우 가급적 실제 개방수준을 반영하여 제한 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
 - 현재 40% 이상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합작 증권사 지분 제한 폐지 등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1차 양허안에서 일단 제외

해운 서비스

- 원유, 철강, 비료 등 8개 품목에 대한 화물유보제도를 폐지
- 예선서비스, 검수·검정·검량 서비스 및 선박임대 (선원 포함) 등을 새로이 포함

다.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주요분야

- 시청각 서비스 :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 서비스 등
- 우편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 뉴스제공업 등

III. 각국 1차 양허안

1. 개 요

- 각국 양허안은 폭이나 수준 등 그 내용에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각국은 아직 협상의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최소범위의 양허안을 제출한 것으로 평가

2. 각국 양허안 주요 내용

미국

- 통신, 시청각, 환경서비스 등 기존에 양허한 분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급배달,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허를 확대
- 고등교육분야를 양허안에 새로이 추가 예정
- 해운서비스 분야는 양허대상에서 제외
- MFN 면제조치는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

일본

- 고등 및 성인교육 등 기존의 양허를 개선
- Mode 4(인력이동) 관련 계약직 인력의 이동을 추가

-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의 제한사항을 개선
- 쿠리어 서비스를 새로이 추가
- 해운보조서비스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해운서비스 양허를 개선

□ 캐나다

-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부동산, 컨설팅 등 일부 사업 서비스의 국적요건을 철폐
- 해운서비스는 Cabotage를 제외하고 양허를 개선
- 시청각, 교육서비스는 이번에도 양허하지 않고, 시청각분야에 대한 MFN 면제도 현행대로 유지

IV. 우리 대응 방안

- 서비스 協商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 제고를 목표로 삼아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확대하되, 금융, 기본통신, 시청각 서비스 등 일부 분야는 개방에 따른 국내적 부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
- 대외경쟁력이 높은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여건 확대
 - 해운, 건설 등 인프라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진입 장벽 완화 추진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동향

1. 도하 Mandate 및 주요일정

- 도하각료선언 16항 및 31항에 따라 2002년 초 협상 개시
 - 사전적 예외없이 모든 비농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또는 철폐
 - Tariff peak(관세정점), high tariff(고관세), tariff escalation(관세누진)의 해소
 -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 고려
 -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또는 철폐
- 주요작업일정
 - 2002년도 상반기는 절차문제로 작업지연, 하반기에 4차례 회의 개최
 - 2003년도 2차례(2.19~21, 4.14~16) 회의 개최, 앞으로 3차례(5.26~28, 7.9~11, 8.18~20) 회의 개최 예정
 - 2003.5.31까지 협상 modalities(세부원칙)에 합의 목표
- 선·개도국간 입장의 양극화로 인해 시한내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 선진국 : 야심적인 관세감축수준 (감축이후 최고세율 : 미국 8%, EC 15%)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도국 특별대우 고려는 formula 설정이 합의된 후 논의할 것을 요구
 - 개도국 : 인도의 일정을 적용(linear) 감축방식(선진국 50%, 개도국 33.3%)을 기초로 모든 요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조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에 반대(less than full reciprocity)
 - 우리는 무역가중평균(trade-weighted average) 관세율의 5년에 걸친 40% 균등 인하와 함께, 고관세(tariff peak, high tariff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

2. 의장 초안의 개요

- 5월 16일 밤(한국시간) Girard WTO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세부원칙의 타결시한인 5.31을 앞두고 이에 관한 초안을 배포
- 동 초안은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비농산물 협상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1) 관세감축공식(formula), 2) 분야별 무세화(sectorial tariff elimination), 3) 개도국 및 최빈국 우대(S&D), 4) WTO 신규가입국 배려, 5) 저율관세(low duties) 철폐 등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의 주요요소를 포함
- 관세감축의 경우, 의장은 모든 품목을 감축대상으로 하되(line by line approach), 기존 높은 관세율은 감축폭을 크게 하고, 낮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변형된 스위스 공식을 제시
- 분야별 무세화의 경우, 개도국 및 최빈국의 수출관심품목인 전자·전기제품, 수산물, 신발류, 가죽제품, 자동차부품, 광석·보석류·귀금속, 섬유·의류 등을 무세화 가능 분야로 제시
- 개도국 및 최빈국 우대와 관련, 개도국에 대해 보다 긴 이행 기간을 설정, 전체 관세항목 개수 중 5%에 해당되는 항목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양허 유지 허용
 - 최빈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의무를 면제하되, 양허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 보완적 세부원칙으로, 공식적용을 통한 관세감축에 더하여 분야별 무세화, 분야별 관세조화, 요청/양허(R/O)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 및 철폐
 - 저율관세 철폐를 검토할 것을 제안

3. 의장 초안 세부내용

가. 관세감축공식 (Formula)

- 모든 비농산물의 관세율은 품목별로 아래 공식을 사용하여 감축

$$t_1 = \frac{B \times t_a \times t_0}{B \times t_a + t_0}$$

t_1 : 최종세율 (종가세)

t_0 : 기준세율

t_a : 기준세율의 평균

B : 조정계수 (추후결정)

* 스위스 공식 : $t_1 = \alpha \times t_0 / \alpha + t_0$

* 기존 스위스 공식의 α 가 의장제안공식에는 $B \times t_a$ 의 2개 요소로 구성됨.

- 기준세율

- 양허품목 : UR 최종양허세율

- 미양허품목 : 2001년 실행세율의 두배 (실행세율이 0%인 경우는 5% 적용)

- 비종가세 : HS 6단위를 기준, IDB 및 UN COMTRADE 자료를 활용, 종가세 상당치로 전환

- 협상시 HS 1996을 사용, 협상종료시 HS 2002를 사용

- 수입 데이터는 1999-2001년을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으로 사용

<의장 초안에 대한 평가>

- 의장이 제안한 공식은 스위스 공식의 변형으로서 미국 및 EC가 주장한 모든 품목의 감축(line-by-line cut)을 유발하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감축폭을 크게 하고 낮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감축폭을 적게 하는 단일조화공식(single harmonizing formula)임.

- 이는 각국의 현행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제발전정도 또는 현재의 관세율 수준을 반영토록 하면서도 시장접근 개선 효과가 큰 방식이나 실제 감축 정도는 공식에 사용할 조정계수 (B)의 크기에 달려 있으며, 동 조정계수는 앞으로 회원국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임.
- 우리 입장에서는 DDA 협상이 전체 균형을 유지하고 협상 목표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우리가 제안한 평균 관세인하 방식과는 달리 개별회원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점이 있음.
-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스위스 공식과는 달리, 평균관세율 요소를 공식에 도입하여 각국별로 평균관세율에 따라 상이한 관세상한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간 개도국 그룹이 주장해온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주요국 비농산물 최종 평균양허세율 및 평균실행세율 (%)

· 미국	3.2 (3.6)
· EC	3.9 (4.3)
· 일본	2.3 (2.7)
· 중국	9.1 (16.3)
· 한국	10.2 (7.5)
· 인도	34.3 (35)
· 말레이시아	14.9 (8.1)
· 필리핀	23.4 (6.8)

나. 분야별 무세화

- 관세감축공식의 적용과 함께 개도국 및 최빈국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제안
 - 전자·전기제품, 수산물, 신발류, 가죽제품, 자동차 부품, 광석·보석류·귀금속, 섬유·의류

- 단계별 관세철폐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철폐하되, 단계별 기간은 동일)
 - 선진국 및 다른 참여회원국 : 1단계 종료시 관세철폐
 - 기타 국가
 - 1단계 종료시 10% 이하로 관세감축
 - 2단계에서는 이러한 관세수준 유지
 - 3단계 종료시 관세철폐
- * 양허품목의 경우는 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미양허품목의 경우에는 2001년도 실행세율을 기준세율로 적용
- 이러한 무세화 분야는 주로 개도국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서 특히 수산물의 무세화에는 우리가 참여하기 어려움.

다. 개도국 및 최빈국 우대

- 개도국에 대한 우대
 - 보다 긴 이행기간 설정
 - 총 품목개수 중 5%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양허하지 않아도 무방 (단, 이들 품목이 총수입액의 5%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함)
 - 상기 내용이 분야별 관세철폐 대상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 최빈국에 대한 우대
 - 관세감축 약속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양허품목은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함.
 - 선진국 및 다른 참여국가는 특정연도(추후 결정)까지 최빈국의 비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무관세, 무쿼타 시행

라. WTO 신규가입국

- 신규가입국들은 가입시 광범위한 시장접근약속을 하였고, 단계별 관세감축을 시행 중에 있음을 감안, 관세감축공식 적용에 있어 더 큰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관세감축폭을 낮출 수 있게 하였음.

마. 보완적 세부원칙

- 상기 공식적용을 통한 감축에 더하여 분야별 무세화, 분야별 관세조화, 요청/양허(R/O)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 및 철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율관세의 철폐를 검토함.
 - 저율관세의 수치는 미정

바. 비관세장벽 (NTBs)

- 도하선언에 따라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이 비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유지
-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확인·검토하는 작업 진행
- 확인작업 이후, 비관세장벽을 분류하여 접근방식을 결정할 것을 제시

3. 전망

-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금년 5월말까지 관세인하방식 및 비관세장벽 협상방식이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모든 비농산물의 100% 양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평균 33%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4. 우리의 대응

- 공산품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관세감축목표 수준은 높게 잡되 임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위한 신축성 확보 노력
- 중간자적 지위를 활용,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역할 모색
- 연찬회, 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간의견 수렴

규범 협상 동향

<협상 내용>

- 반덤핑
 - 반덤핑(anti-dumping)은 외국 수출자의 덤핑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임.
 - 다른 나라들의 반덤핑 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WTO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
- 보조금
 - 국가가 특정 산업을 보조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국제 무역을 왜곡하게 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 보조금과 관련된 WTO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
- 수산보조금
 - 수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인 보조금 논의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수산 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율 검토하는 협상이 진행중
- 지역협정
 - 자유무역협정(FTA)은 당사국간에 특혜(무관세 교역 등)를 주고 받는 협정으로서, 그 내용이 WTO 규정에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기준 및 절차 등을 논의하는 협상

1. 반덤핑

가. 각국 입장

(1) 우리나라 및 반덤핑 Friends

- WTO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협정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WTO 반덤핑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반덤핑 조치의 남용 여지를 상당히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그 규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수출자에게 불리한 규정 등이 여전히 포함
 - 더욱이 WTO 설립이후 미국, EU 등 전통적인 반덤핑조치 이용국 이외 여타 WTO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련법을 도입, 시행함에 따라 반덤핑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상품에 부정적 효과 야기
-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Friends 국가들은 반덤핑 논의의 활성화 및 협상 진전에 주도적 역할
 - 2002년 중 4차례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여 총 32개의 검토 이슈를 제시
 - 조사개시 요건 강화
 - 재심시에도 원조사와 같은 기준(Average-to-Average 비교 방식, 2% de minimis 등) 적용
 - 덤핑마진 및 피해판정기준 강화
 - 반덤핑 조치의 조기 종료 등
 - 2003.3월 부터는 핵심 이슈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의 2단계 제안서를 제출
 - 반덤핑 조치는 5년후 예외없이 종료시킬 것을 제안 등

(2) 미국

- 반덤핑 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협정의 실질적 개정에 소극적
 - 따라서, 주로 절차적 문제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 (조사 절차의 공개, 적법 절차, 절차의 투명성 등)
- 반덤핑 조치를 야기하는 무역 왜곡 관행(덤핑 행위, 보조금 지급 행위)의 규제에 협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3) EC, 호주, 캐나다

- 기본적으로 Friends와 미국의 중간적 입장
 - Friends가 제시한 협정 개정 이슈들에 대한 논의에 다소 긍정적이며,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한 방향의 제안서도 제출 (EC)
 - 이와 동시에, 미국이 제안하는 무역 왜곡 관행에 대한 규제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캐나다)

(4) 일부 개도국 : 모로코, 이집트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 (수출 개도국과 반덤핑 조치 선진국으로 양분되는 종래의 반덤핑 논의에 새로운 입장으로 대두)

나. 향후 과제

- Friends 그룹 등이 제안한 구체적인 개정 이슈들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진행
 - 단, 협상의 기본 목표에 대한 Friends 그룹과 미국과의 시각차가 여전히 현저함.

-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고, Cancun 이후의 협정 개정의 구체화 작업 단계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하는 상황
- Friends 그룹은 반덤핑 조치의 증가 및 폐해에 대한 홍보,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한 정치적 관심 증대, 반덤핑 논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국가 및 기타 개도국들을 포용하는 노력(outreach) 경주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가. 논의 동향

- 그동안 논의가 활발하고 못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미국, EC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논의를 주도하면서 관심이 증대
 - 미국은 무역왜곡적 관행으로서의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강조(금지보조금의 확대, 간접보조금에 대한 규제, 정부의 투자 규제 등)
 - EC는 보조금협정 전반, 특히 위장보조금, 국가통제기관 등의 개정 필요성 제기
 - 개도국은 2000년 효력이 소멸한 허용보조금 조항(제8조)의 재도입 검토 제안

나. 우리 입장

- 우리나라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선진국과 같은 입장으로 참여할 필요성 검토
 -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해 지고있으며, 경쟁 개도국의 보조금 관행을 견제할 필요
- 단, 상계조치는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반덤핑협정의 개정과 비슷한 방향의 관련 조항의 강화를 지지

- 최근, 미국 등이 제안하는 보조금 규제 내용에는 현재 보조금 관련 양자 통상협안(반도체, 조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 각 쟁점별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

3. 수산보조금

가. 논의 동향

- 수산보조금의 별도 논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대립이 지속
 - Fish Friends(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교역의 왜곡 등을 강조하고, 수산물 무역의 특성상 현행 보조금 규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별도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 일본 등은 현 보조금협정의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
 - 캐나다, EC는 우리측에 가까운 입장에서 별도 논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
-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ish Friends 및 미국의 주도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02.11월 회의시 뉴질랜드가 2003년부터 우선 수산보조금 유형 확인 및 분류작업 부터 진행할 것을 제안
 - 2003.2월 회의시 Friends 6개국은 수산보조금 유형을 나열하는 공동제안서 제출
 - 2003.3월 미국은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어획과 직접 관련 있는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제안서 제출
 - 2004.5월 EC는 어획능력을 증강시키는 보조금(어선 건조 지원)을 금지보조금으로 하자는 제안

나. 우리 입장

- 현행 보조금협정의 틀 안에서 수산보조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견지
 - 수산보조금과 자원 고갈간의 관계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으며,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Fish Friends 그룹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은 보조금협정의 명확화 및 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

4. 지역협정

가. 논의 동향

-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은 협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타 분야에 비해 관심도도 낮고 실질적인 논의 진전 미약
 - 절차적 문제만 논의하다가, 5월 협상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 없이 회의 종료

나. 우리 입장

- 지역협정에 대한 WTO 차원의 규범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규정 개선을 지지
 - 통보 및 정보제공 등 절차 규정, “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 무역구제조치의 역내국 면제, 특혜원산지 기준 등

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책

아 림 부

I . DDA 농업협상 동향

II . 세부원칙 협상 주요쟁점과 대책

III . 양허협상 전망과 대책

IV . 쌀 재협상 준비

I. DDA 농업협상 동향

- 2000년에 시작된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출범을 계기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세부원칙(Modality) 협상 진행중
 -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 등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수출국과 이에 맞서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수입국(NTC 그룹), 그리고 특혜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3각 대립 구도 하에서 협상 진행

- 농업협상 특별회의 Harbinson의장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 Modality 초안 배포
 - 동 초안은 UR협상에 비해 더 급진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으며, 개도국우대가 확대된 것이 특징

- 지난 3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한내 Modality 수립 실패
 - 의장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수출·입국 모두 불만 표시
 - 수출국들은 의장초안보다 시장개방 폭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 * 케언즈 그룹은 비판적이긴 하나 의장초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수용
 -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들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지나치게 높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교착상태에 빠진 농업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주요 쟁점별로 비공식 협의 진행

○ 개도국 우대, 국내보조, 시장접근물량(TRQ)관리 등 주요
쟁점별로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충 시도

II. 세부원칙(Modality)협상 주요쟁점과 대책

1. 협상의 주요 쟁점

가. 관세 감축

의장 수정안 내용

구 분	선 진 국				개 도 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 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 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초 안 요 지	90%초과	60%	45%	5년	120%초과	40%	30%	10년
	15~90%	50%	35%		60~120%	35%	25%	
	15%이하	40%	25%		20~60%	30%	20%	
					20%이하	25%	15%	
UR협상 결 과		36%	15%	6년		24%	10%	10년

※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중요한 일부 품목

주요국 입장

- 수출국(미국·케언즈그룹) : 스위스공식 도입, 관세율 상한 설정
- 수입국(NTC그룹, 동구권) : UR방식 도입, 관세감축률 하향 조정
- 개도국 :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나, 특별품목 범위 확대에 관심

□ 평가

- 우리나라는 “90% 초과(개도국 120% 초과)” 항목에 주요 품목(실품목 31~33개)이 집중되어 있어 수용이 어려운 상태
- Modality협상 타결 직전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최대 쟁점으로서, 수출국은 관세상한 설정을 주장하고 있어 수입국 입장만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

나. 국내보조(AMS) 감축

□ 의장 수정안 내용

구 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초안지	60%	5년	40%	10년
UR협상결과	20%	6년	13.3%	10년

- 총액기준 감축. 단, 품목별로 1999~2001년 평균지급액 초과 불가
-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 가능

□ 주요국 입장

- 수출국 및 개도국 : 선진국의 보조는 의장초안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케언즈그룹은 보조금 폐지주장)
- EU, 일본 : 현행 초안의 AMS 감축률 수준 자체는 큰 어려움 없음

- 수입국(한국, 노웨이, 스위스, 대만 등) : 감축률 하향 조정
 - 우리나라, 노웨이,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이 주장하는 수출용과 내수용의 감축률을 차별화하는 방안은 지지 국가가 적은 상황

□ 평가

- 상당수 국가가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현행 의장 수정안 보다 감축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우리나라는 총 감축보조의 90% 이상을 쌀에 사용하고 있어 의장안대로 확정될 경우 쌀 수매제도 등 양정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

다. 저율관세쿼터(TRQ) 증량

□ 수정안 내용

구분	선진국		개도국	
초안 요지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미만 품목은 10%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8%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12%까지 증가	5년간 이행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6.6%미만 품목은 6.6%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5%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8%까지 증가 * SP품목은 증량 면제	10년간 이행
UR협상 결과	기준년도('86~'88년)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3%에서 5%로 확대(MMA), 3% 이상인 품목은 최소한 기준년도 수입량 보장(CMA)	6년간 이행	선진국과 동일	10년간 이행

- 저율쿼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 가능

□ 주요국 입장

- 수출국 : 모든 품목에 대해 의장 수정안보다 증량폭 확대
 - 케언즈그룹 : 최근 소비량의 20%를 추가
- 수입국 : 기본적으로 증량 반대
 - 일본 : 최근 소비량 변화를 반영(소비량이 감소한 품목은 축소)
 - 한국 : 최종 양허수준 대비 일정 비율 증량, 증량폭 최소화

□ 평가

- 우리나라는 최근 소비량이 증가한 양념류 등이 부담을 받을 전망
 - 최근 소비량 증가폭이 큰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 감귤 등

라. 기타 허용보조, 특별긴급관세(SSG), 수출보조 등 30여개 쟁점도 논의중

2. 향후 Modality협상 전망

□ 6월까지 : 의장 주도로 협상 지속 노력

- 4.23~25 동안 국내보조요건, TRQ 국내소비량 계산방법 등 논의
- 5월중에는 TRQ 관리방안, 특별세이프가드, SP품목 범위 논의
- 6월중에는 WTO 비공식 각료회의(이집트) 개최 예정

- 6월 ~ 9월 : 칸쿤 각료회의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지속
 -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있어 미국·EU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EU의 신축성 발휘 정도가 동 합의의 관건
 - 6월 EU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전향적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도출해 내느냐가 EU의 신축성 발휘 정도를 결정

- 9월 : 칸쿤 각료회의를 계기로 Modality 타결 시도
 - EU는 금년말 평화조항 만료를 고려하여 6월 정상회의에서 다소 신축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할 전망
 - 이 경우 EU는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타결에 적극성을 보일 수도 있음
 - Modality가 타결된 이후에 각국은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 <평화조항 : Peace Clause, 농업협정 제 13조> ————

- 2003년 말까지는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감축의무를 준수하면 일반 보조금협정(보조금상계조치협정)상의 보복조치를 자제토록 한 조항
- 이 조항이 만료되면 수출보조금 등은 보조금상계조치협정상 금지 보조금이 되어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가 가능해짐

3. 세부원칙(Modality)협상 대책

- 최대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
 - 기존의 NTC그룹 활동 외에 주요 개도국그룹 및 제3의 수입국그룹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여건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선택기반 구축

- NTC그룹 등 주요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큰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구사
 - 관세감축, 특별품목(SP)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입장 반영을 위한 실무 협의에 적극 참여
 - 협상 타결의 중심 축인 미국, EU 등 주요국의 동향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타결직전 예기치 못한 최종 상황에 대비

- 대내적으로는 협상동향을 적극 홍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을 추진
 - 주요 국면별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농림부 홈페이지, 이메일정보서비스, 지방순회 설명회 등 활용
 - 농업인단체 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협상대표단에 포함 시키도록 하며, 의원외교활동과 농업인단체 등 NGO 활동도 측면 지원

Ⅲ. 양허협상 전망과 대책

1. 전망 및 대책

- 세부원칙 협상 시한내 타결 실패에 따라 협상 일정 조정 불가피
 - 당초 일정 : 금년 9월까지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 '03.10월~'04년말 : 이해관계국과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
 - 금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합의된다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양허협상은 확정된 세부원칙에 기초하여 품목별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이해관계국의 검증과 협의절차를 거쳐 확정
 - 세부원칙 협상은 그룹별 협상 성격이 강한 반면, 양허협상은 개별 이해당사국간 양자협상의 성격이 강함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대상국은 세부원칙 협상 과정에서 수입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 중국, 호주 등 수출국들임
- 세부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제거하되, 실질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제출
 - 명분에 집착한 평면적 보호보다는 품목별 영향을 미리 점검하여 보호의 우선순위 설정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 이행계획서의 골격은 품목별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절차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최대한 투명성 확보

□ 우리나라의 최대 쟁점은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될 전망

- 개도국지위 유지여부에 따라 의무부담 수준이 달라지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임

2.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

□ 현행 의장 초안은 UR협상 결과에 비해 개도국우대를 확대 반영

- 선진국에 비해 이행기간은 2배,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은 ⅓, 국내 허용보조 및 수출보조상 신축성 확대 등
- 개도국에 대해서만 특별품목(SP)을 신설하여 낮은 수준의 관세 감축을 적용하고 저율관세쿼터(TRQ) 증량도 면제

□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해 대외적 여건은 유리하지 않은 상황

- 개도국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되면서 수혜개도국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예상
 - 선진국들은 WTO 무역개발위원회와 OECD 무역위원회 등에서 개도국을 발전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졸업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우리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 일반적으로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

- 개도국 지위의 불가피성을 이해당사국에 적극 설득하고, 사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 대책 강구
 - Modality협상은 개도국 입장에서 대응하고, 주요국을 사전 접촉하여 설득작업을 추진하되 당당한 자세로 대응
 -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작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도국들과 공조

IV. 쌀 재협상 준비

1. 현황 및 고려 요인

□ 관세화유예 근거

- 근거조항 : WTO 농업협정 부속서(Annex) 5. B
- 시장접근물량 허용(TRQ, 기준년도 소비량 대비)
 - ('95) 1% → ('99,'00) 2% →('04) 4%

□ 협상여건

< 시 기 >

- 원칙적으로 2004년중에 시작 · 종결
 - 다만, 품목별 이행계획서(C/S) 작성 · 제출과 관련하여 2004년 이전에 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선택가능 대안 > :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 진행중인 Modality 협상결과와 개도국지위 유지여부에 따라 쌀 협상의 유 · 불리 영향의 판정기준이 달라짐

□ 결정 변수

- 관세화 유예 연장시 : 수락가능한 추가양허 부여
 - 시장접근물량 확대 등 수출국들의 과도한 시장개방 요구 예상

- 관세화 :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 감축
 -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외국산 수입급증 우려

2. 추진 계획

- 현재 진행중인 세부원칙 협상단계에서는 관세화 유예 근거 조항 유지, 관세감축 및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폭의 최소화 등에 주력
 - 세부원칙 수립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개도국지위 유지와 쌀 교역상대국 설득에 주력
 - 쌀협상 개시 전에 적절한 시기에 주요 교역상대국을 방문하여 관세화유예시의 요구조건 등 입장 파악
- 국내적으로는 구체적인 영향분석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쌀 협상 관련 입장과 전략을 수립
 - 세부원칙에 관한 협상결과를 감안한 대안별 구체적인 영향 분석 실시
 - 농경연 등 연구결과를 감안,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 공청회·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 협상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응방안 강구
- 관세화 유예여부와 관계없이 시장개방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쌀 산업의 구조개편 촉진과 농가 소득안정장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중